
정보통신 표준화와 연계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분석

· 박웅 · 이병남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mail: wungp@etri.re.kr, Tel: 042-860-4941, Fax: 042-861-5404

Analysis on Standardization related IPR Policy of Japan

· Wung Park · Byoung Nam Lee · Jae-Hong Min

· · · :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 E-mail: wungp@etri.re.kr, Tel: 042-860-4941, Fax: 042-861-5404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장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서 론

세계 경제가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3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

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1. 개 요

일본은 2002년 2월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한다는 고이즈미 총리대신의 시정연설을 기반으로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2002년 3월에 지적재산전략회의가 발족하여 같은 해 7월에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공정을 명시한 지적재산전략대장이 결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2년 11월에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

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립되었다.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증대시키는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해 세부 시책을 포함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책정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설립 이후 지난 2003년 7월에 약 270항목의 시책을 담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03을 책정하였고, 다음해인 2004년에는 추진계획 2003의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가하여 약 400 항목에 이르는 시책을 담은 추진계획2004가 책정되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기존의 시책을 한층 더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진전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한 시책의 추가나 새로운 문제에의 대책을 포함하여 약 450 항목에 이르는 시책을 담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를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2.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은 지적재산전략의 이념,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향한 추진방침 등의 내용을 서술한 총론과 각 분야별로 세부 시책을 담은 5개의 장, 그리고 성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의 구성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의 구성

총 론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제4장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창조 국가에의 추진
제5장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성 과

우선 지적재산의 창조 분야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이라는 지적재산 사이클의 시작인 지적재산 창조를 위해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질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을 촉구하고 우수한 지적재산을 창출한 연구자를 충분히 평가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책을 기술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보호 분야에서는 지적재산 창조의 인센티브 확보와 그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적재산 보호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는 주요 시책을 서술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활용 분야에서는 지적창조 사이클이 빠르고 크게 회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적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지적자산 가치실현의 최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창조 국가에의 추진에서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지역 브랜드 등 일본의 지적·문화적 자산을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목표한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외 확산을 통해 일본 브랜드의 확립을 위한 주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에서는 지적재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역할에 맞는 전문가나 실천적인 실무가를 육성하여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기술하고 있다.

3. 표준화와 연계한 지적재산권 정책

정보통신 표준화와 연계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의 제3장(지적재산의 활용) 3절(국제

표준화활동을 지원한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국제표준화활동의 강화와 함께 기술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취급규칙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1) 전략적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우선 전략적인 국제표준화활동의 강화를 위한 세부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 지적재산전략과 표준화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를 관민이 함께 표준화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실시계획에 있어서 지적재산전략과 표준화전략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관민에 의한 전략적인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SO 및 IEC에 대해서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가 ITU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심의회가 서로 연계를 도모하면서 국제표준화기관의 인수나 이에 대한 전략 및 인력 육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일 정보통신표준화 모임 등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등 연계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표준화 심의를 신속히 함으로써 국내 표준화 과정을 국제표준화 과정에의 단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를 일관성 있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각 부처 간의 연계 및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민간의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가 일본 산업경쟁

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및 표준화활동의 중요성 등을 보급하여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내 국제표준화 활동 총괄부서의 설치 및 지적재산부서와의 연계나 국제표준화제안에의 전략적인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국내규격책정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규격과 상이한 국내규격의 책정이 WTO/TBT 협정에 위반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국내규격책정에 관한 움직임을 적시에 포착하여 관민과 연계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다.

(2)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규정 정비

기술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취급규칙의 정보를 위한 세부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표준의 책정·보급에 지장을 주는 필수특허의 권리행사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의 라이선스 거부는 기술표준의 책정 및 보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제표준화기관의 현행 특허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표준화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여 2005년도 내에 독점금지법 상 지침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허 풀(patent pool)에 관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풀의 형성 및 운영은 독점금지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독점금지법 상의 지침에 대해 금년 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III. 결론

일본은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경제침체에서 탈피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적재산권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택하여 지적재산의 창조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지적재산 사이클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 활용 측면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표준화와 저적재산의 연계를 통한 국제 시장의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표준화전략과 지적재산권 전략을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자국 개발 기술의 지적재산을 국제표준화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적재산과 국제표준화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

리나라에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의 증진과 함께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며 각 분야별 상황에 따른 동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 지적재산 전략추진계획 2005”, 2005.6
- [2] LG경제연구원, “일본의 기술보호주의 대두와 대응방안”, 2005.3
- [3] 전자통신동향분석, “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및 Patent DB 현황 분석,” 20 권 4호, 2005. 8